

대련진푸신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페렴
예방퇴치지휘부 명령
제 1 호

진푸신구지휘부 각성원단위,각기능구 당위원회,관리위원회,각 가두 당위원회,판사처,신구 각 관련부서:

군중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수호하고 신형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의 전파와 확산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방지법》,《중화인민공화국돌발사태대응법》,《공공위생사태응급조례》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민정부,요녕성 당위원회 및 인민정부,대련시 당위원회 및 인민정부의 예방퇴치 조치에 따라 대련진푸신구 신형코로나 바이러스페렴 전염병 예방퇴치 지휘부의 연구결정에 따라 하기와 같이 령을 발포한다.

1. 각 성원단위,공능구,가두는 전염병예방 퇴치사업을 현재의 가장 중요한 일로 간주하여 신속히 전투 시스템에 진입하여야 한다.현재부터 당위원회와 정부의 책임자들은 담당 직책을 꼭 지키고 최전선에서 솔선지휘하며 관련인원들은 휴가를 사전 끝마치고 신속히 본직에 복귀하여 책임성있게 본분을 다해야 한다.각 관련단위에서는 신구 지휘부의 요구에 따라 부서의 직책에 결합하여 구체적이고 실행이 용이한 전염병예방퇴치 응급방안 및 대책사업방안을 제정하여 구체적사업 수행을 추진해야 한다.

2.각 가두는 본 행정단위 급별의 전염병 예방제어 지휘부를 설치하되 당위원회의 통일영도하에 관할구역의 전염병예방퇴치 사업을 지휘한다.

3. 요녕성,대련시의 신형코로나바이러스 폐렴전염병예방퇴치지휘부의 명령을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견결히 집행한다.

4. 전면적으로 호북성 특히는 우한시에서 대련시에 복귀한 인원상황을 체크하여 한사람도 빠뜨리지 않으며 폐렴감염 의심환자 및 밀접히 접촉했던 인원들을 격리보호를 실시하는 동시 격리기간동안 생활을 충분히 보장해준다.상기 인원들은 주동적으로 등기 및 보고해야 하며 격리관찰을 수용하여야 한다.

5. 전철역,공공버스역,부두 및 고속도로 입구 등 중점 장소에서 체온검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6.도서관,박물관,체육관,대극장,음악홀,영화관,수영장,헬스장 등 공공시설과 야생동물 및 날짐승(활금) 판매장소의 영업을 일률적으로 정지한다.

7.각종 연출,시합,포럼,전시회,집회,집시 등 대형활동을 일률적으로 취소한다.

8.신구의 대내외 관광경영활동을 잠시 멈추며 전염병 중점발생지역에서 방문하는 관광단체는 일률적으로 권고하여 본지역에 돌아가게 한다.

9.어떤 요식업체이든 개인의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군체성 식사활동을 금지한다.

10.관광지,백화점,병원,음식점,호텔 등 공공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 및 일반택시,인터넷콜택시,공공버스 운전자들은 일률적으로 마스크를 끼고 영업에 종사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은 꼭 마스크를 꺼야만 공공장소에 드나들수 있다.

11.전염병 예방퇴지에 급히 필요한 물자의 생산과 공급,감독관리,비축을 가강해야 하며 투기목적으로 물자를 사재기하거나 가격을 터무니없

이 높이는 자들을 견결히 타격하여 시장의 평온한 상태를 보증한다.

12.신구의 각 기업들은 주체책임을 낙실하고 전염병방역 응급방안을 제정하여 직원들의 복귀방안을 합리하게 안배하며 전면적으로 전염병 의심 요소들을 확인하고 체온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공장 전지역 내 소독을 가강하고 전염병의심 환자가 발견되면 즉각 보고해야 한다. 중점적으로 호북 특히는 우한출신 직원들에 대한 검사 및 통계를 진행하며 춘절기간 호북 및 우한에 돌아간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간 대련에 복귀하지 말기를 권고한다.이미 신구에 복귀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따라 격리조치를 취하고(14 일) 격리기간 보수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13.엄격히 매일신고제도와 령신고(口报口)제도(상황이 변화가 없더라도 신고함)를 집행하며 늦게 신고하거나 기만하여 신고하고 실수효보다 적게 신고하는 현상을 절대 용인하지 않으며 전염병 예방및 퇴치관련 상황을 실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한다.

14.전염병예방 및 퇴치사업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배합하지 않으며 엄중한 폐해를 조성한 자에 대해서 법에 따라 과감하게 조치하고 처리한다.

15.대중은 정부의 신형코로나바이러스페렴 예방퇴치사업을 감독해야 하며 호북성 지역에서 근간 대련에 온 인원들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예방퇴치사업 진행중 규범에 맞지 않거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다.

24 시간 연계전화:87693405;휴대폰/위챗:15524550731;연계인:이관군(口关口)

본 명령은 발포한 기일부터 실행하며 해소기일은 따로 통지한다.

대련진푸신구 신형코로나바이러스페렴

전염병예방퇴치지휘부

(대련진푸신구위생건강국 대체인감)

2020 년 1 월 28 일